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725

발의연월일: 2021. 9. 29.

발 의 자:이용빈・김경협・유정주

김민철 • 윤영찬 • 양정숙

한준호 · 김윤덕 · 홍정민

강은미 · 김홍걸 · 조정훈

오영환 · 김진표 · 이정문

한병도 • 이원욱 • 김민석

김성주 · 강득구 · 이광재

장경태 · 이용호 · 고영인

김병욱 • 윤준병 • 이용선

조오섭 · 정취숙 · 전혜숙

서영석 의원(3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·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.

「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」(보건복지부 지침)에 따르면 65 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노인성 질병 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더라도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 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나,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 양급여 수급자가 된 자는 추후 장애인이 되더라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불가능하게 됨.

그런데 장애등록과 노인성 질병의 발생 순서에 따라 수급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이력 여부와 상관없이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·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65세 미만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5조 등).

법률 제 호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 중 "신청자격"을 "신청자격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- 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.
- ②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중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·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는 활동지원급여 또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.

제12조제2항 단서 중 "제5조제2호"를 "제5조제1항제2호"로 한다. 제12조의2제4호 중 "제5조제1호"를 "제5조제1항제1호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활동지원급여의 <u>신청자격</u>)	제5조(활동지원급여의 <u>신청자격</u>
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	<u> 등</u>) <u>①</u>
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	
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	2. 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.
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	
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	
<u>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.</u> 다	
만,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	
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	
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	
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	
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	
자격을 갖는다.	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
	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중 65
	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・뇌혈
	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
	활동지원급여 또는 「노인장기
	요양부헌법 에 따른 장기요양

제12조	(수급자격의	유효기간)	1
(생	략)		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해당 월의 다음 월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한다. 다만, 수급자가제5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.
- ③ (생략)
- 제12조의2(수급자격의 상실) 수급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때에 활동지원 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한다.
 - 1. ~ 3. (생략)
 - 4. <u>제5조제1호</u> 또는 제2호에 따 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

	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
	<u>다.</u>
제	12조(수급자격의 유효기간) ①
	(현행과 같음)
	2
	제5조제1항제2호
	③ (현행과 같음)
제	12조의2(수급자격의 상실)
	1. ~ 3. (현행과 같음)
	4. 제5조제1항제1호
	_